

환경국 업무보고

1. 저공해 자동차 보급

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사용 자동차를 차종에 따라 압축천연가스(CNG)차, 액화석유가스(LPG)차, 전기하이브리드차,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저공해화 추진

□ CNG 청소차 보급

- 대상차종 : 자치구 직영 8톤이상 대형 청소차
- 보급대수 : 30대('03년 10대, '04년 20대)
- 추진방법 : 대형청소차 대·폐차시 CNG차와 경유차(자치구 부담분)의 차액 6,000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 보조
- 추진현황 : 조달 단가계약 체결이 다소 늦어져 보급이 지연되었으나, 계약이 완료('03.7.23 11톤 암롤, '03.8.29 11톤 압축)되어 구매를 조속히 추진하여 10대 연내 보급 완료

□ LPG 개조차 보급

- 대상차종 : 운행중인 중소형 관용 청소차 및 화물차
- 보급대수 : 585대('03년 135대, '04년 450대)
- 추진방법
  - '03년은 시범사업('03.10월~'04.3월)으로 추진(환경부 기본계획, '03.8월)
    - 대당 4백만원을 보조하여 135대(청소차 130대, 승합차 5대) 개조
    -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(환경부, 서울시, (사)대한LPG산업환경협회 합동)
  - '04년까지 시·자치구 보유 개조가능 중소형(2.5톤급 이하) 화물차(청소차 포함)를 전량 개조, 대당 5백만원(국비 50%, 시비 50%) 보조
- 추진현황 : 개조수행 정비업체를 선정후 '03.10월 하순부터 본격 개조하여 연말까지 135대 개조 완료

※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전기하이브리드차 '04년 시범사업 추진

- 환경부 DPF 520대, DOC 1,098대, 전기하이브리드차 200대 수도권 예산 편성중

2. 음용 지하수관정 관리현황

□ 관리대상 : 2003. 8월 현재

- 이용관정 : 794개(허가105, 신고 689)

□ 검사결과 및 조치현황

- 2002년도 검사결과

대상 관정	검사결과		부적합 조치사항			비 고
	적합	부적합	재검적합	원상복구	용도변경	
474	381	93	72	3	18	용도변경 (음용수 → 생활용수)

- 중요 부적합 수질항목 : 총대장균군, 질산성질소, 철, 망간 등

- 관정 조치내역

구 분	년초 관정	조 치 내 용			신규 개발	신고 (경미 시설)	년말 관정	비 고	
		원상 복구	용 도 변 경						조치후 관정
			음→생	생→음					
2002	474	△4	△31	9	448	12	338	798	2002.11.17까지 경미시설 신고 (지하수법 제8조제1항)
2003.8	798	△5	△14	9	788	6	-	794	

- ※ 경미시설(양수능력 30톤미만 가정용, 2002년)신고 : 338건(수질검사 제외)
- ※ 경미시설 : 강서구 336건(발산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: 폐쇄예정), 관악구2건

□ 향후 지하수 수질개선 대책

-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시 (시정개발연구원 용역 : 2003. 8 ~ 2004.12)
  - 지하수 오염 원인분석
  - 지하수 오염 예방대책
  -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방법 연구

3. 생활권 공원확충 추진현황

□ 공원조성 및 정비

- 사업개요
  - 대 상 : 용마도시자연공원(면목약수터지구) 등 14개소 156,747㎡
  - 사 업 비 : 15,800백만원
- 추진내용
  - 자연공원조성(3개소) : 훼손지 녹지복원, 산책로 정비, 휴식시설 설치
  - 근린공원조성(7개소) : 휴식공간 및 운동시설 설치, 수목식재 등
  - 공원 재정비(3개소) : 시설물재배치, 노후훼손 시설보수 수목식재 등
- 추진실적
  - 공원조성(10개소)
    - 완 료(2개소) : 장지근린공원조성, 시민의 숲 수경시설
    - 추진중(8개소) : 도시자연공원 3, 근린공원 2, 구관리공원 3개소
  - 공원 재정비(3건)
    - 추진중(3건) : 효창근린공원, 보라매공원, 응봉근린공원
- 향후계획
  - 추진중인 사업을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도
  - 공사중 안전사고 방지 및 감독 철저히 시공수준 향상

□ 장기미집행공원 용지보상

- 전체 공원면적 : 157.5km<sup>2</sup>
- 보상대상
  - 면 적 : 50.98km<sup>2</sup>
  - 소요예산 : 약 59,229억원(공시지가 기준)
- 연도별 보상계획

구 분	계	2002년	2003년	2004년	2005년	2006년
면적(천 m <sup>2</sup> )	3,737	212	256	1,089	1,089	1,091
예산(억원)	4,000	433	454	1,037	1,037	1,039

- 사업개요(2003)
  - 대 상 : 답십리근린공원 등 27개소 255,907㎡(2003 추경 2개소 포함)
  - 사 업 비 : 45,422백만원(본예산 40,800, 추경예산 4,622)
- 추진현황
  - 완 료 : 7건(11,050백만원, 32,333㎡)
  - 추 진 중 : 20건(34,372백만원, 223,574㎡)
- 향후계획
  - 협의 불응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협의보상을 최대한 유도하고
  - 협의가 어려운 곳도 수용 재결 조치하여 조기에 보상토록 지원

4.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 추진

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귀중한 녹지를 조성·보전해 나가고자 시차원의 녹지확충사업과 함께 시민·사회단체·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도시녹화운동으로 전개

□ 사업개요

- 서울그린트러스트 설립, 시민과 함께 녹지 확보
- 서울숲에 시민·가족나무심기를 출발점으로 다양한 도시녹화사업 전개

□ 추진현황

- 2003. 5. 4 : 서울숲 조성 시민·가족 나무심기 행사(봄철) 개최
  - 성금(217건/565,200천원), 수목식재(4,820주)
- 2003. 8. 20 : (재)서울그린트러스트 설립
- 2003. 9. 19 : 도시숲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

□ 시민·가족 나무심기 가을철행사

- 일 시 : 2003.11. 1 (토) 10:30~12:30(2시간)
- 장 소 : 서울숲 조성지 일대(3,800평)
- 참여인원 : 1,000여명(예정)
- 행사내용 : 기부금을 납부한 시민, 단체, 기업과 함께 나무심기
- 기부안내
  - 서울그린트러스트 홈페이지 : www.sgt.or.kr
  - 서울그린트러스트 파트너십 사무실 : 3216-4242
- 모금단위
  - 개인, 가족, 소모임 : 1구좌(1만원) 이상
  - 기업 및 단체 : 100평(1,500만원) 이상
- 모금현황 : 10.6일 현재 54건 186백만원(개인·가족 52/6, 기업 2/180)

5. 다이옥신 측정결과 축소공개 경위 및 조치

- 노원자원회수시설 2호기 다이옥신 측정결과 축소공개로 주민이 반대하여 9.19일부터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었으나
- 대주민 사과와 협의를 통하여 9.24일 부터 정상반입 및 소각로 가동을 하고 있음

□ 개 요

- 5.29일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이옥신 측정
- 6.17일 환경부 질의회신에 의거 연구용으로 변경 7.1일부터 배출기준이 0.1나노그램로 강화되므로 대비 차원
- 8. 1일 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시험성적서 위탁운영사에서 접수(0.445 나노그램)
  - ※ 법적 배출기준 : 0.5나노그램, 주민협약기준 : 0.1나노그램

□ 수정공개 경위

- 측정치가 법적기준 이내이고 4개월간의 운휴 후 17일간만 가동한 상태에서 측정하였고
- 연구용으로 공개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위탁 운영회사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중
- 측정결과에 은폐를 주장하는 주변지역 일부 주민의 집회 등 여론이 악화되어 위탁 운영회사의 소장이 수정 공개(0.094나노그램)

□ 조치내용

- 9.15일 한국시거스에 물의를 일으킨 소장에게 해임 등 중징계 요구
  - 9.18일 한국시거스에서 인사조치 및 사과문 게시
    - 운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중징계 요구
- 9.15일 중계2동 주민 120여명에게 사과 및 향후계획 설명

- 9.22일 주민협의체(시영단지측)와의 협의
    - 주민동의하에 협의체에서 요청하면 노원구에서 쓰레기 반입
    - 2호기를 재측정하여 기준초과시 시설폐쇄 등을 수용토록 하고 시설의 안정성이 입증되면 시·구에서 책임지고 홍보
  - 9.23일 시영단지 주민 3,150세대의 동의로 쓰레기 반입토록 통보
  - 9.24일 쓰레기 반입 및 2호기 가동
  - 9.27일 주민협의체위원 및 시영단지 대표와 간담회
  - 9.29일 서울시·협의체위원(시영단지측) 및 노원구 합동 간담회
  - 9.29일 유사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활성탄 현탁액 주입설비를 설치후 가동중에 있음
- 향후계획
- 문제가 된 2호기는 주민들이 추천한 2개의 검사기관에서 주민들의 입회하에 재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함
  - 9.25일 주민협의체에 측정기관 선정 통보토록 요청

.....

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 319 호
- 다. 제출일자 : 2003. 9. 26
- 라. 회부일자 : 2003. 9. 29

2. 제 안 사 유

-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에 친환경제품의 생산·구매 확대와 서울의제 21제정·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,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골 자

- 가. 시의 환경보전 기본원칙에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자원·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을 추가함.(안 제3조제4호·제6호)
- 나.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에 친환경제품의 생산·구매확대, 서울의제 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 (안 제5조제1항제4호·제10호)
- 다.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의 책무에 환경오염방지, 자연환경 보전,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, 지방의제 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6조)
- 라.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.(안 제26조제3항)
- 마.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민을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교육 및 시민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6조제4항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환경정책기본법(제3조·제7조·제7조의2·제7조의4  
- 제14조의3·제28조·제37조) -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기 타
  - (1) 개정조례 전문 : 별 첨
  - (2) 입법예고(2003. 8. 30 ~ 2003. 9. 18) 결과 : 의견 없음.
  - (3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 협의(2003. 9. 20)결과, 규제사무 없음

5. 세 부 내 용